

위법계약 해지 요구서

본 해지요구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에 따라 ABL생명보험과 체결한 금융 상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.

■ 고객 정보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연락처

■ 기재사항

금융상품명_계약번호			
계약체결일		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	
법 위반사실			
계약해지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성 원칙 위반 (법 제17조 제3항)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성 원칙 위반 (법 제18조 제2항) <input type="checkbox"/> 설명의무 위반 (법 제19조 제1항·제2항·제3항) <input type="checkbox"/>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(법 제20조 제1항)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(법 제21조)		

■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, 합리적인 근거자료 (증빙 자료 첨부 필요)

증빙 및 첨부자료	※ 필요시 증빙 및 첨부자료 별도 첨부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■ 안내사항

-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)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표준약관 제32조(해지환급금)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.
- 회사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2항에 따라 “정당한 사유”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- ※ 정당한 사유
 - ①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
 - ②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고객이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
 - ③ 고객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
 - ④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

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 후 위법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_____ (서명/인)

대리인 _____ (서명/인)

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